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시 지자체 협의의무 신설〉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5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세수입 수납액이 예산 대비 부족하여 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교부하려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u><신설></u>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5조(예산 계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 국가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부세를 조절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안의 검토

지방교부세란 현행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2)에 따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다음 표와 같이 각각 내국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담배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구분]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 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국세수입 예산과 연동된 금액으로 편성하여 국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과소 수납되면 정부는 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예산을 각각 감액경정한 후 집행하거나(2020년), ②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교부(일부 불용)하거나(2013년·2022년·2023년), ③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한 후 현행법 제5조³⁾에 따라 차차년도 예산안 편성시 초과교부액을 상계 처리(2014년·2019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취하고 있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지방교부세 예산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예산을 계상하고 그에 맞추어 지출예산을 편성·확정하는데, 회계연도 중 ①~②의 방식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 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 편성된 지출예산을 온전히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를 감액 교부하는 경우 국가(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i) 협의 의무라는 점에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ii)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재정지출을 사전에 조정하여 재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다만, 개정안은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경우(①의 방식)로 협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2항에 따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①·②의 방식) 전체에 대하여 협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이에 연동하여 부칙 제2조(적용례)의 조제목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전 협의 의무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